2014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4년 10월 23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하 성 근 위 원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조 정 환 거시건전성분석국장

윤 면 식 통화정책국장 김 민 호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실장

허 진 호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10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10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특히, 가계, 기업, 은행 등 각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분석을 종전의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음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은행 주택담보대출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서는 LTV·DTI 규제 완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 등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미칠 영향과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였음.

둘째, 기업실적 분포 변화와 잠재리스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실적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동 변화가 고용, 설비투자,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업실적이 편중된 상황에서 금리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점검하였음.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현황과 잠재리스크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구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넷째, 신흥시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채권 발행 동향 및 잠재리스크에서 는 신흥시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후 미 연준의 통화정 책 정상화 등과 관련한 잠재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일부 위원들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LTV·DTI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가독성(可讀性)이 높아지도록 본문의 기술이나 도표 등을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이 지난 9월에 발간된 통화신 용정책보고서와 다른 시각차를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음.

첫째, 금융안정보고서의 발행 취지를 고려할 때 당행이 금융안정의 구체적인 규제수단은 없지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한 권고(recommendation)를 중요한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후, 권고를 통해 당행의 공식입장을 대외공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면 당행의 금융안정부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둘째, 현재 금융안정보고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사후적인 자문에 그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사전에 자문을 받음으로써 당행만의 입장이 아닌 외부의 시각 도 반영하고 질(quality)적 개선도 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문을 활용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음.

셋째, FSB, BIS 등 여러 국제 실무급 회의에서 당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국제적 논의에서 당행의 대표성(representative)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부문 당행 실무자들의 역량을 보다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 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FSB, BIS 실무그룹에 상당수 당행 직원들이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안정보고서의 권고 및 평가 부분 개선과 자문위원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정체성(identity)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담당부서가 금통위와 충분히 논의하여 동 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의 기능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한 권고 (recommendation)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진단과 확실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 동 보고서를 발전시켜 나갈지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4년 10월)(안)(생략)